

## 20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 개혁과제 공개질의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얼마 전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간첩조작, 선거개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시급히 개혁해야 할 권력기관으로 꼽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원과 관련한 ‘의혹사건’ 22개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정보수집파트를 없애고 정부기관과 언론사에 출입하던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는 등 내부개혁조치를 추진했습니다.

한편, 2020년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폐지(경찰로의 이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을 3년간 유예되었고 대공수사권의 폐지를 전제로 조사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대응조치’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국정원의 권한으로 추가시킨 반면, 국정원에 대한 감독장치로 제안된 정보감찰관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021년 초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인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에도 불구하고 후속과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 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에 대한 질의

- 1) 국정원 개혁의 방향과 국정원 권한(직무범위)의 축소에 대한 후보자의 공약 또는 기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경찰로의 이관) 시행에 대한 질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2020년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 창설 이후 약 40년 만에 대공수사권이 폐지(경찰로의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이 3년 유예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란 유예기간은 과도합니다. 대공수사권 폐지(경찰로의 이관)의 유예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경찰로의 이관) 유예기간 축소

찬성		반대	
기타			

### 3) 조사권 부여에 대한 질의

2020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은 대공수사권의 폐지 이후 국정원장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관계기관 등에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국정원 직원에게는 정보수집을 위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 진술요청 등의 방식의 조사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조사권의 부여는 정보수집과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조사권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의 형사법상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수사권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니다.

이에 후속 입법을 통해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국정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부여될 국정원의 조사권 삭제

찬성		반대	
기타			

### 4) ‘대응조치’ 개념에 대한 질의

2020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수행에 정보활동과 관련된 조치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대응조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대응조치’를 직무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정보수집활동을 넘어선 국내에서의 내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공작활동까지도 합법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후속 입법을 통해 ‘대응조치’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대응조치’ 삭제

찬성		반대	
기타			

5)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에 대한 질의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왔습니다.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정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고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 수립과 판단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전체의 정보예산편성권을 행사하면 다른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등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의 이관

찬성		반대	
기타			

6)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 및 인사검증 동원에 대한 질의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0년 말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하도록 그 대상을 축소·한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아 국정원은 여전히 3급 이상 공무원임용예정자, 각 시·도의 행정부지사, 판사·검사 신규 임용예정자, 국·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에 대한 신원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국정원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검증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 어디에도 국정원의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없었으며 더욱이 2020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개념을 삭제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수집은 불법입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신원조사 권한의 폐지 및 국정원의 인사검증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 폐지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 상 관련 규정 삭제

찬성		반대	
기타			

- 국정원의 인사검증 활용

찬성		반대	
기타			

## 7)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에 대한 질의

국정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가사이버안보법」(의안번호 211314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 제정을 통해 그 권한을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사이버보안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은밀한 감시와 사찰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투명성과 민관협력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이버보안업무를 기밀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관련 권한을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보안기본법안」(의안번호 2113670.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의 이관 및 바람직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원의 공공기관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권한 이관

찬성		반대	
기타			

-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민간의 정보통신망에까지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대한 찬반

찬성		반대	
기타			

## 2.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에 대한 질의

국정원의 내부통제장치로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검사, 적법활동 등의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감찰관을 국회 정보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 당시 정보감찰관제는 도입되지 않았고, 차후 입법과제로 미뤄졌습니다. 따라서 후속 입법을 통해 정보감찰관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능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2년마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변경되고 더욱이 국회 정보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임에 따라 소속 의원이 관련한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옴부즈맨 등)>를 설치하여,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공약 또는 기본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개별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

- 국정원의 내부통제 장치로서 정보감찰관제 신설

찬성		반대	
기타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찬성		반대	
기타			

3. 국정원의 민간사찰 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에 대한 질의

2021년 초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찰문건의 공개와 관련해 문건을 특정해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찰피해당사자조차 자신에 대한 사찰문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련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정원이 내놓은 자체감찰결과도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으로 한정된 매우 제한된 결론이며,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7월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사찰문건을 피해당사자에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영삼 정부 이후 이루어진 모든 불법사찰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시일이 걸린다면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또한 필요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의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관협동으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불법사찰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조사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정원의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에 대한 후보자의 공약이나 기본입장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개별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

- 정보공개청구여부와 무관하게 사찰피해당사자에게 사찰문건 공개

찬성		반대	
기타			

- 사찰정보 공개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찬성		반대	
기타			

- 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찬성		반대	
기타			